

제29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9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진 도 군



1. 제29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9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각 1부.

목 차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3-67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68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6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70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 획 홍 보 실	
2023-71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구 정 책 실	
2023-72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구 정 책 실	
2023-73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2023-74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무 과	
2023-75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 무 회 계 과	
2023-76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무 회 계 과	
2023-77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 제 에 너 지 과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담당부서	비고
2023-78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민 복 지 과	
2023-79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민 복 지 과	
2023-80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 건 행 정 과	
2023-81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설관리사업소	
2023-82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 무 회 계 과	
2023-83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 획 홍 보 실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67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37조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법률 위임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제3조)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4조~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3명)은 기획예산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 위촉직 위원(12명)은 민간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
 -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
 -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의 해촉 및 직무(안 제6조~제7조)
-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안 제8조~제9조)
- 의견청취 및 관련 법령 준용(안 제10조~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6. 7. ~ 6.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1. 원안가결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투자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학계, 사회단체대표,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련 법령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내용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68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위원장 선임)
 - “3명”을 “5명”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제1호)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공직자윤리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12. ~ 8. 1.(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가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3명”을 “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p> <p>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u>3명</u>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2.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5명</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69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 (23.06.28.)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 법제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함으로써 부서별 정비를 지양하고 법령과 자치법규간의 통일성 있는 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만’으로 규정한 자치법규 조문에서 ‘만’ 표시 삭제
 -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만 ○세’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

3. 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7. 26 . ~ 8.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의 개정)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49세”를 “49세”로 한다.

제2조(「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8세 이상 만”을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3조(「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의 개정) 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제4조(「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의 개정)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5조(「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별표 2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인 (65세이상)	아동 (12세미만)	일반 주민	비고
-----	---------------	-----	---------------	---------------	----------	----

제7조(「진도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8조(「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9조(「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진도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

제11조(「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12조(「진도군 하수도 조례」의 개정) 진도군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13조(「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만6세”를 “6세”로 한다.

제14조(「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만25세”를 “25세”로 한다.

제15조(「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7세 이상 만”을 “7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만 20세 이상 만”을 “20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6조(「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 7세 이상 만”을 “7세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만 13세 이상 만”을 “13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만 4세 이상 만”을 “4세 이상”으로 한다.

별표 2의 감면내용란 기호(○) 중 “만 55세”를 “55세”로 한다.

제17조(「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만7세”를 “7세”로 한다.

제18조(「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의 개정) 진도군 주거취약계층 주택개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만 세”를 “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p>는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p> <p>가.·나. (생략)</p> <p>6.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p> <p>-----.</p> <p>가.·나. (현행과 같음)</p> <p>6.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제2조(「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u>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인</u> 사람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p> <p>-----.</p> <p>1. ----- <u>18세 이상</u> -----</p> <p>-----</p> <p>-----</p> <p>-----</p> <p>-----.</p> <p>2. ~ 5. (현행과 같음)</p>

제3조(「진도군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지원대상자의 자격)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자격은 귀농어업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 당시 <u>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인</u> 자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 지원</p>	<p>제8조(지원대상자의 자격) -----</p> <p>-----</p> <p>-----</p> <p>--- <u>20세</u> -----</p> <p>-----.</p>

과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 ---
----------------------	--------------

제4조(「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u>만 18세</u>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 <u>18세</u>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진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12. <u>만 19세</u> 미만의 저소득층 여	제5조(지원내용) ①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19세</u> -----

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3.·14. (생 략) ② (생 략)	----- 13.·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u>만65세</u>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 ---. 1. ----- <u>65세</u> ----- -----. 2. (현행과 같음)																												
【별표2】 공중목욕장 사용료	【별표2】 공중목욕장 사용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별</th> <th>국민기초생활수급자</th> <th>장애인</th> <th>노인 (만65세이상)</th> <th>아동 (만12세미만)</th> <th>일반주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료 (1인 1회)</td> <td>무 료</td> <td>무 료</td> <td>1,000원</td> <td>1,000원</td> <td>2,000 원</td> <td></td> </tr> </tbody> </table>	대상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만65세이상)	아동 (만12세미만)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1인 1회)	무 료	무 료	1,000원	1,000원	2,000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별</th> <th>국민기초생활수급자</th> <th>장애인</th> <th>노인 (65세이상)</th> <th>아동 (12세미만)</th> <th>일반주민</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사용료 (1인 1회)</td> <td>무 료</td> <td>무 료</td> <td>1,000원</td> <td>1,000원</td> <td>2,000 원</td> <td></td> </tr> </tbody> </table>	대상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65세이상)	아동 (12세미만)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1인 1회)	무 료	무 료	1,000원	1,000원	2,000 원	
대상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만65세이상)	아동 (만12세미만)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1인 1회)	무 료	무 료	1,000원	1,000원	2,000 원																								
대상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65세이상)	아동 (12세미만)	일반주민	비고																							
사용료 (1인 1회)	무 료	무 료	1,000원	1,000원	2,000 원																								

제7조(「진도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노인”이란 진도군에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65세</u> ----- ---. -----

<p>3호에 따른 시장형 사업, 인력 과견형 사업은 <u>만 60세</u> 이상 으로 한다.</p> <p>3. (생략)</p> <p>제6조(참여자격)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공익활동형 사업의 참여자 격은 참여 신청일 현재 진도군 에 거주하는 <u>만 65세</u>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장 형, 인력과견형은 <u>만 60세</u>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로 한다.</p> <p>② (생략)</p>	<p>----- ----- <u>60세</u> ----- -----.</p> <p>3. (현행과 같음)</p> <p>제6조(참여자격) ① ----- ----- ----- ----- <u>65세</u> ----- -----.</p> <p>----- <u>60세</u>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8조(「진도군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4대 이상 가정”이란 <u>만 70세</u>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 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 (또는 그의 배우자)이 동일 주 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u>70세</u> ----- ----- ----- ----- -----.</p> <p>2. (현행과 같음)</p>

제9조(「진도군 국·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육대상) 어린이의 입소대상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u>만 12세</u> 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제5조(보육대상) ----- ----- -----. ----- <u>12세</u> ----- -----.

제10조(「진도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1.·2. (생략) 3. <u>만 6세</u> 이하인 어린이와 65세 이상인 사람 4. ~ 17.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 ----- -----. 1.·2. (현행과 같음) 3. <u>6세</u> ----- ----- 4. ~ 1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진도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p>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u>만18세</u>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가정용 수도사용량 중 10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p> <p>7. ~ 9. (생략)</p> <p>② ~ ④ (생략)</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 <u>18세</u> -----</p> <p>-----</p> <p>-----</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

제12조(「진도군 하수도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1조(감면 등)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u>만18세</u>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별표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중 가정용 1단계 단가 적용</p> <p>8. (생략)</p>	<p>제21조(감면 등)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18세</u> -----</p> <p>-----</p> <p>-----</p> <p>8. (현행과 같음)</p>

제13조(「진도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3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p>	<p>제3조(물놀이장 이용) ① -----</p>

<p>장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다만, <u>만6세</u> 이하의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p> <p>-- <u>6세</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14조(「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3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 대상자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u>만 18세</u> 이상~64세 이하의 주민으로써 교육 이수 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기로 동의한 자로 한다.</p> <p>③ ~ ⑥ (생략)</p>	<p>제13조(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인력 양성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18세</u> -----</p> <p>-----</p> <p>-----</p> <p>-----.</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2. (생략)</p> <p>3. 보호자를 동반한 <u>만 6세</u> 이하의 어린이</p> <p>4. <u>만 65세</u> 이상인 사람</p> <p>5. ~ 18. (생략)</p> <p>② (생략)</p>	<p>-----</p> <p>-----</p> <p>-----.</p> <p>1.·2. (현행과 같음)</p> <p>3. ----- <u>6세</u> -----</p> <p>-----</p> <p>4. <u>65세</u> -----</p> <p>5. ~ 1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16조(「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유아”란 <u>만 6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8. “어린이”란 <u>만 7세 이상 만 12세</u>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9. “청소년”이란 <u>만 13세 이상 만 19세</u>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p> <p>10. (생략)</p> <p>11. “어른”이란 <u>만 19세</u>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u>만 65세</u> 이상인 사람은 경로우대 대상</p>	<p>제2조(정의) -----</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6세</u> -----</p> <p>-----.</p> <p>8. ----- <u>7세 이상</u> -----</p> <p>-----.</p> <p>9. ----- <u>13세 이상</u> -----</p> <p>-----</p> <p>-----</p> <p>-----.</p> <p>10. (현행과 같음)</p> <p>11. ----- <u>19세</u> -----</p> <p>----- <u>65세</u> -----</p> <p>-----</p>

으로 본다.

12. (생략)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만 3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자 1인이 2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

6. 만 4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나 인솔자 1인이 4인 이상 동반하여 수영장에 입장하는 경우

7. (생략)

[별표 2] <개정 2021.12.29.>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제13조 관련)

감면내용	감면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 전국,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체육회장 및 진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관련 행사	50%	
○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체육활동<인조축구구장>		
○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	100%	실내수영장
○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하의 유아		
○ 진도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와 지도자		
○ 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2.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

1. ~ 4. (현행과 같음)

5. 3세 -----

6. 4세 이상 -----

7. (현행과 같음)

[별표 2] <개정 2021.12.29.>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내역(제13조 관련)

감면내용	감면비율	비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 전국, 도 단위 체전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전국, 도 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체육회장 및 진도군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또는 예선경기		
○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관련 행사	50%	
○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조기체육활동<인조축구구장>		
○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	100%	실내수영장
○ 보호자와 동행한 3세 이하의 유아		
○ 진도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 선수와 지도자		
○ 진도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감면내용	감면비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수가 무료입장을 인정하는 자가 출입증 휴대 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한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부모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가입여성(만 55세 이하) 	30%	

※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감면내용	감면비율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는 경우 ○ 군수가 무료입장을 인정하는 자가 출입증 휴대 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반한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18세 이하의 세 자녀를 둔 부모 	50%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중 가입여성(55세 이하) 	30%	

※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함.

제17조(「진도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별표 2]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칭</th> <th>기준</th> <th>구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몽골텐트</td> <td>1동</td> <td>30,000원</td> <td>1일</td> </tr> <tr> <td>샤워장</td> <td>1인</td> <td>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td> <td></td> </tr> </tbody> </table> <p>※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 일 : 오전 11:30 ~ 익일 11:00 까지를 말한다. 2. 어른 :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사</p>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몽골텐트	1동	30,000원	1일	샤워장	1인	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p>[별표 2]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명칭</th> <th>기준</th> <th>구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몽골텐트</td> <td>1동</td> <td>30,000원</td> <td>1일</td> </tr> <tr> <td>샤워장</td> <td>1인</td> <td>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td> <td></td> </tr> </tbody> </table> <p>※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 일 : 오전 11:30 ~ 익일 11:00 까지를 말한다. 2. 어른 :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사람</p>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몽골텐트	1동	30,000원	1일	샤워장	1인	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몽골텐트	1동	30,000원	1일																						
샤워장	1인	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몽골텐트	1동	30,000원	1일																						
샤워장	1인	어른 2,000원 학생·군인 1,500원 어린이 1,000원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0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코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능(안 제3조)
 - 군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 새로운 국가·광역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군정 주요시책의 국가·광역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 자문 및 시책 제안(안 제8조)
 -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 자료 제공과 협조(안 제9조)
 -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예우 및 수당(안 제11조)
 - 군수는 위원을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군정 홍보물 송부 등 군청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전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2. ~ 8. 23.(21일간) / 의견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 위원 범위 추가 (여성·가족(또는 양성평등)·청년정책)
→ 개선의견 반영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4. 수정의결

○ 수정안

조 항	당 초	수 정
제4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

○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① ----- ----- 15명 ----- -----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따라 진도군의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래전략과제”란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 과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진도군미래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군의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 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진도군정(이하“군정”이라 한다)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의 건의, 현안사항의 대처·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4.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적인 정보 및 자료 제공
5. 새로운 국가·광역시책에 부응하는 군정 발전과제 발굴 및 정책대안 제시, 군정 주요시책의 국가·광역 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정발전에 관한 자문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일자리·첨단산업, 농·수·축산업, 복지·교육, 여성·가족(또는 양성평등), 청년정책, 문화·관광·체육, 건설·교통, 일반행정 분야의 대학교수 등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전체 회의는 년 2회 개최 할 수 있고 특별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책부서 실·과·소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부서 팀장이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문 및 시책 제안)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정책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요청이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군정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제안서를 수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제공과 협조) 위원은 자문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우 및 수당) ① 군수는 위원을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군정 홍보물 송부 등 군청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는 자문의뢰 안건 등에 대한 자료수집, 사실조사 등에 필요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도군 미래전략 자문료 등 집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

구 분	집행기준 한도액	자문 결과물	비 고
자 문 료	300천원	A4용지 3매 이상 5매 미만	
	500천원	A4용지 5매 이상 10매 미만	
	1,000천원	A4용지 10매 이상 30매 미만	
	1,500천원	A4용지 30매 이상 50매 미만	
	2,000천원	A4용지 50매 이상 80매 미만	
	3,000천원	A4용지 80매 이상	80매 이상 10매 초과 당 200천원씩 추가

※ 자문결과물 기준

-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자문의견에 대한 참고자료나 인용자료는 매수 산정 시 제외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1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 발굴부터 자립까지 종합적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9조제5항제4호)
 -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를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대표”로 변경
-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13조 및 제21조)
 - 1)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
 -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계획 수립지원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 조직발굴 및 육성지원
 - 2)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 유사업무 수행하는 기관과의 통합 또는 위탁운영 근거 마련
 -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지원 가능
 - 재정지원 분할 지급가능 규정 및 집행실적 보고 및 정산 검사 근거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6. 14. ~ 7. 4.(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 원안가결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이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사회적경제 조직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 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 대표

제11조제8항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3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교부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3. ~ 7. (생략)</p> <p>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p> <p>① (생략)</p> <p>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 (생략)</p> <p>4. <u>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u>에 관한 사항</p> <p>5. ~ 10. (생략)</p> <p>③ · ④ (생략)</p> <p>제9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p> <p>①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이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u></p> <p>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회적경제 조직, 중간지원조직, 연계기업(이하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라 한다)</u>----- ---</p> <p>5. ~ 10.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 3. (생략)

4.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5. (생략)

⑥ (생략)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생략)

<신설>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마을공동체 관련 전문가,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대표

5.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발굴 실태조사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 조직 간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5. 사회적경제 생산물의 구매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참여기관 종사자 및 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시행 지원

8.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 제19조 (생략)

제14조 ~ 제20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신 설>

제20조 ~ 제22조 (생략)

제21조(교부 및 보고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
급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
은 정산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 제24조 (현행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2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4~27조)

1) 지원센터의 기능(안 제24조)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및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 등

2)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및 비용지원(안 제25조)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3) 지도 감독 및 위탁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26조~안 제27조)

- 위탁사무 추진상황 보고 및 필요서류 검사
- 수탁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 해제 가능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6. 14. ~ 7. 4.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 원안가결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 평가 및 연구
3.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
5.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⑦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u></p> <p><u><신 설></u></p>	<p>제23조(수당 등) ----- ----- -----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마을공동체 만들기</u> <u>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u></p> <p><u>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u> <u>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 조사, 사업 분석, 평가 및 연구</u> <u>3. 마을 자원조사·진단·상담 등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원</u> <u>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국내외 사례현장 견학 등 지원</u>

<신 설>

5. 주민조직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6. 전문가, 민간단체 등과의 연계망 구축·운영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신 설>

<신 설>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⑦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 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를 통해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운영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

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 · 제25조 (생략)

제5장 보칙

제28조 · 제29조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진도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통보

2023년 제13회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2023. 8. 23.)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의안번호	자 처 법 규 명	심의결과	소관부서	비고
2023-35	진도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의결	총무과	서면
2023-36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원안의결	총무과	서면
2023-37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총무과	서면
2023-3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원안의결	기획홍보실	서면
2023-3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도군 규칙 일괄 개정규칙안	원안의결	기획홍보실	서면
2023-40	진도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기획홍보실	서면
2023-41	진도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의결	기획홍보실	서면
2023-42	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인구정책실	서면
2023-43	진도군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인구정책실	서면
2023-44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45	진도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주민복지과	서면
2023-46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원안의결	경제에너지과	서면
2023-47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세무회계과	서면
2023-48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시설관리사업소	서면

붙임 심의 의결서 14부, 끝.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3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 도 군 수

1. 개정이유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해 이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실시 규정 신설(안 제18조 제14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 사용 가능(안 제18조 제8항 제2호)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3639호)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2. ~ 8. 22.(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불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2호 중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군수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서 5일(2회 분할 사용가능)의 사기진작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최초 임용일부터 실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4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에 따른 단서 조항(제16조제3항) 삭제로 인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6조~7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삭제에 따라 조례 제6조(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문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19. ~ 2023. 8.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재향군인회”를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을 “제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u>재향군인</u> 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지원대상 사업) <u>법 제16조 제3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제6조(예산지원) ----- <u>법 제16조 제2항</u>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 -----.</p> <p>제7조(지원대상 사업) <u>제6조</u>----- ----- -----.</p> <p>1. ~ 5. (현행과 같음)</p>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5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심의주문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수 조례 개정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 서면심의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 신속한 사업추진 및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의결
-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안 제7조제2항 신설)
 -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
-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기준(안 제12조제3항 신설)
 - 기준 금액 취득·처분 시 10억, 기준 면적 취득 시 1,000㎡, 처분 시 2,000㎡
- 기부채납의 원칙 신설(안 제15조제2항 신설)
 - 기부채납 시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지 않아야 한다.
-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안 제22조의2 신설)
 -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자는 끝나는 날의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
-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납부(안 제22조의3 신설)
 -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분할 납부

- 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안 제25조의2)
 - 외국인 투자기업, 상시 종업원 수 30명 이상 이거나 원자재 30퍼센트 이상 군에서 조달하는 경우, 군 품질인증을 받은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안 제31조)
 -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
-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안 제32조)
 -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건에 따라 100분의 30, 100분의 50, 100분의 80을 감면하거나 사용·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전부 면제를 세분화
- 대부료 등의 납기(안 제35조)
 - 대부료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2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3회,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안 제38조의2 신설)
 -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
 -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에 분할 납부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안 제40조)
 - 영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함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7. 26 . ~ 8.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2.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할 수 있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 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과약)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기준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 면적이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 이상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0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②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이하“고시 이자율”이라 한다.)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한 때에는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품질인증을 받은 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로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제2조13호에 따른 지식
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제29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를 합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 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20조의2 및 제25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지역소득특화사업 및 주민소득증대 등 군정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및 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3. 영 제20조제1항제20호 및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단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및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거나,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9월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 : 6월이내 3회 분납.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4. 3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9월 이내 4회 분납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조, 제8조의3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매수자 외의 연접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군수가 투자유치, 관광개발등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공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이 농축수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
 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제3절 신탁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0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2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읍·면, 사업소 등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각 청사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피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4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건축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5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6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군수·부군수 또는 기타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47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관사의 면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8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 인수 등) ①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1조(합병 등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 지목변경 등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군수에게 그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할)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6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상위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조문 개정(안 제1조 및 제7조)
 - 「지방재정법」제95조 및 제94조 조문 삭제에 따라 「지방회계법」제50조 및 제49조로 개정
- 알기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안 제2조)
 - 제2조 “1에 해당하는 자를”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개정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8. 2. ~ 2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4.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49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2. (생략)</p> <p>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조(목적) ----- 「지방회계법」 제50조----- ----- ----- ----- -----.</p> <p>제2조(회계관계공무원)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 「지방회계법」 제49조-----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23-77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및 용어 정의 규정
-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련한 일반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 세입 및 세출, 이월사용, 준용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26. ~ 8. 15.(20일간) / 제출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8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수탁자 의무 조항 일부를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탁자의 의무 중 전대금지 조항 개정(안 제9조 4호)
 - (현행)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 (변경)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하 생략)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6. 28. ~ 7. 1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를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4. 수탁자는 시설을 <u>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u>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p> <p>5. ~ 7. (생략)</p>	<p>제9조(수탁자의 의무)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4. ----- <u>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u> ----- ----- ----- ----- -----.</p> <p>5. ~ 7. (현행과 같음)</p>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79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배우자 수당 지급 대상자를 2009년 6월 1일 이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예우를 위해 진도군 거주 중 사망한 모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조례 내용 중 관련 법령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 부적격 대상 상위법령 근거 수정(안 제3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를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로 변경
-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4조제3호, 부칙-적용례)
 -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로 변경
 - “2009년 6월 1일 이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 를 “진도군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변경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19. ~ 8.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자”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 하고, 제4조제3호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사실 및 혼인 관계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혼인관계증명서”로 한다.

진도군조례 제2616호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에 한하여”를 “규정은 진도군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배우자는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배우자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u>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제외한다.</u></p>	<p>제3조(지원대상) -----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p>
<p>제4조(지원사업)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대상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예수당 월 12만원 지급 2. (생략) 3. 배우자수당 월 7만원 지급(<u>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음 달부터 배우자에게 지급</u>) 4. (생략) 	<p>제4조(지원사업) -----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현행과 같음) 3. -----<u>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u>----- ----- ----- 4. (현행과 같음)
<p>진도군조례 제2616호 진도군 참전</p>	<p>진도군조례 제2616호 진도군 참전</p>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명
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으
로 지급하고, 소급 지급하지 않
는다. <후단 신설>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적용례) ----- 규정
은 진도군 거주 중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의 배우자
에게 -----

---. 이때, 배우자는 신청일 현
재 진도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
관계증명서상 혼인 관계가 확인
된 배우자에 한한다.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3-80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이 '23. 3. 28.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하여 진도군 관련 조례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조항: 제1조(목적) 및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 내용: 본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근거 법령이 지역보건법 제34조로 규정되어 있음
 - 사유: 지역보건법 제34조 단서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 개정: 지역보건법 제34조로 근거 법령 일부개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결과 : 2023. 6. 7 . ~ 6. 27.(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1. 원안의결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로 한다.

제3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기준</th> </tr> <tr> <th>1회 위반</th> <th>2회 위반</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신 설></td> </tr> <tr> <td>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4조 제1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4조 제1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신 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p style="text-align: center;">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 ----- -----.</p> <p>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p> <p>[별표] 과태료 부과기준</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부과기준</th> </tr> <tr> <th>1회 위반</th> <th>2회 위반</th> <th>3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4조 제1항</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td> </tr> <tr> <td>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4조 제2항제1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r> <td>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법 제34조 제2항제2호</td> <td style="text-align: center;">5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1,5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신 설>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2.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위반사항	근거법령	부과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1,000	1,500	3,00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81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1. 개정이유

- 군 체육시설 사용자의 보상권 강화를 위해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반환 개정(안 제14조 제1항 제5호 신설)
 - 군의 귀책 사유로 취소되었을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3. 7. 19. ~ 8.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3. 8. 23.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군의 귀책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반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안 번호	2023-82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에 매입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진도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도개테마파크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
- 진도개테마파크 진·출입로 확보하여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부지 매입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3. 세부 내역 : 첨부

4.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5.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첨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 사유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답	진도읍 동외리 268-1	4,894	974,178	2023.10.	진도개 테마파크 조성	토지 및 임야
2	답	진도읍 동외리 1027	1,374	419,619		진도개 테마파크 진출입로 확보	
3	답	임회면 석교리 254	2,380	22,420	2024.3.	진도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	전	임회면 석교리 268	1,769	6,581			
5	전	임회면 석교리 268-1	337	1,197			
6	임야	임회면 석교리 산 86-1	555	386			
7	전	임회면 용호리 439-1	704	2,725	2023.9.		
8	전	임회면 용호리 440-1	473	2,477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

연번	제 목	심 의 요 지	제안부서
1	진도개 테마파크 조성 및 진출입로 확보 부지 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진도읍 동외리 268-1 외 1필지 - 면 적 : 토지 6,268㎡ - 대장가액(감정) : 1,393,797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진도개 테마파크 조성 및 진출입로 확보 	진도개축산과 (테마파크팀)
2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임회면 석교리 254 외 5필지 - 면 적 : 토지 6,218㎡ - 대장가액 : 35,786천원 - 소 유 자 : 개인 - 목 적 :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문화예술체육과 (체육지원팀)

1. 진도개 테마파크 조성 및 진출입로 확보

1. 제안이유

- 진도개테마파크 관광명소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진도읍 동외리 268-1번지 매입
- 진도개테마파크 진·출입로 확보하여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동외리 1027번지 매입

2. 주요내용

- 매입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감정평가액 (천원)	비고
계				6,268		1,393,797	
1	토지	진도읍 동외리 268-1	답	4,894 (1,480평)	서광일	974,178	
2		진도읍 동외리 1027	답	1,374 (415평)	김옥례	419,619	

3. 주관과 의견

- 진도개테마파크 관광명소화사업 편입토지 및 진도개테마파크 진·출입로인 부지를 매입하여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 치 도(위성사진)





진도읍 동외리 268-1 (답 / 4,894m³)



진도읍 동외리 1027 (답 / 1,374m³)

2. 진도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1. 제안이유

- 임희면 용호리 439-1번지(외 4필지) 일원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계획 하였으나 동호인 수 증가로 접근성이 용이한 임희면 석교리 254번지(외 3필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함
- 당초 관리계획 필지 중 용호리 439-1, 440-1번지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추가부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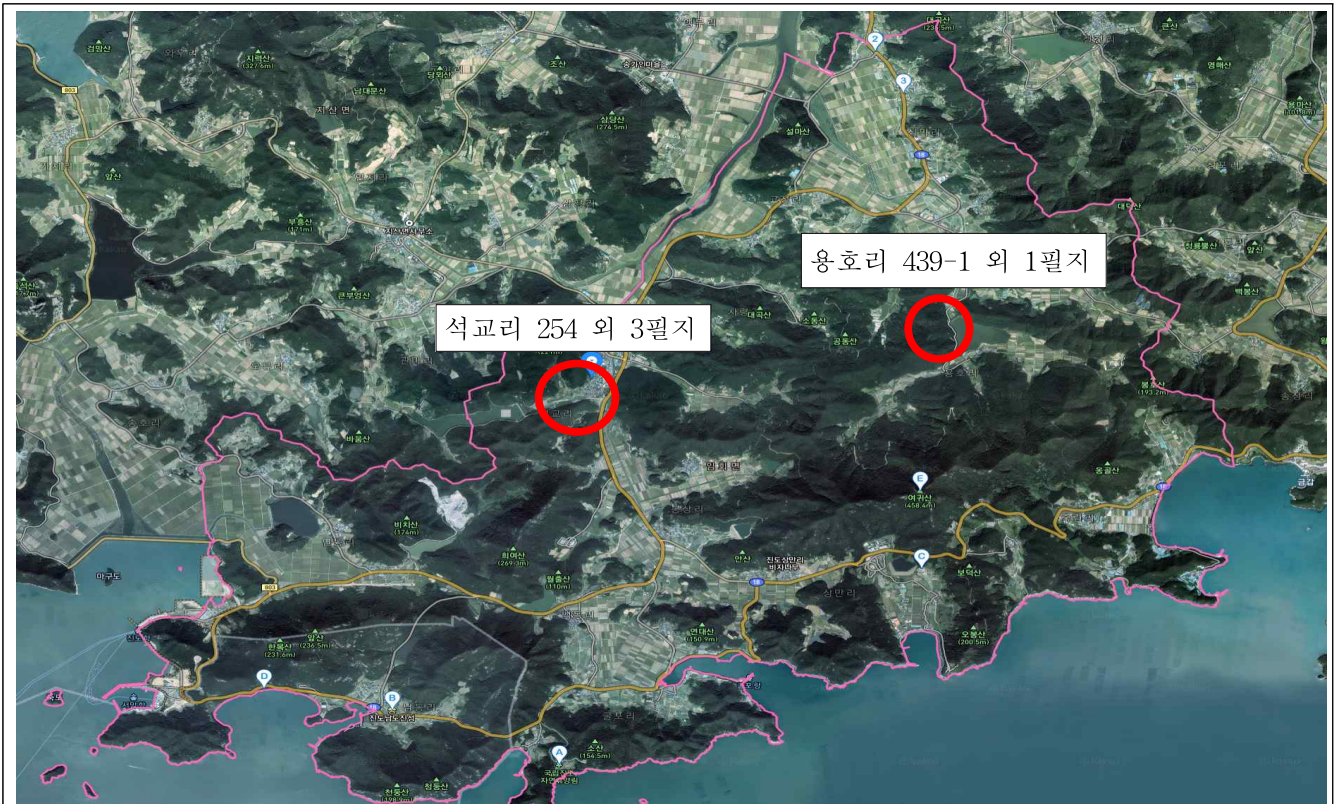
- 공유재산 매입에 관한 사항

연번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재산가액(천원)	비 고
계		6필지		6,218	35,786	
1	토지	임희면 석교리 254	답	2,380	22,420	
2		임희면 석교리 268	전	1,769	6,581	
3		임희면 석교리 268-1	전	337	1,197	
4		임희면 석교리 산 86-1	임야	555	386	
5		임희면 용호리 439-1	전	704	2,725	
6		임희면 용호리 440-1	전	473	2,477	

3. 주관과 의견

- 진도군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석교리 일원의 부지를 신규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 기존 동호인이 이용중인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골프장 조성시까지 안정적인 체육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위 치 도(위성사진)



임희면 석교리 254 외 3필지



임회면 용호리 439-1 외 1필지

|| 현장사진



임회면 석교리 254 외 3필지



임희면 용호리 439-1 외 1필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2023-83
----------	---------

제출년월일 : 2023. 8. .

제출자 : 진도군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주요골자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경정 (A)	기정 (B)	증감액 (A-B)	
				%
합계	565,675,640	548,032,304	17,643,336	3.22
일반회계	555,866,117	538,222,781	17,643,336	3.28
특별회계	9,809,523	9,809,523	-	-

의안내용 : 첨부

【첨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조서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합 계	565,675,640	548,032,304	17,643,336	3.22	-	
일반회계	555,866,117	538,222,781	17,643,336	3.28	-	
특별회계	9,809,523	9,809,523	-	-	-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565,675,640	548,032,304	17,643,336	-	-	
일 반 회 계	555,866,117	538,222,781	17,643,336	-	-	
특 별 회 계	9,809,523	9,809,523	-	-	-	
특 별 회 계	소 계	9,809,523	9,809,523	-	-	
	상 수 도	8,341,815	8,341,815	-	-	
	의료급여기금	722,916	722,916	-	-	
	자활기금	599,907	599,907	-	-	
	주민소득 지원기금	29,034	29,034	-	-	
	주택사업	71,796	71,796	-	-	
	간척사업	44,050	44,050	-	-	
	농공지구 조성사업	5	5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		
기금회계	22,905,150	22,885,137	20,013	0.09%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경 정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22,905,150	22,885,137	20,013	-	-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8,790,125	8,790,125	-	-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58,452	58,452	-	-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226,627	206,627	20,000	-	-	
재 난 관 리	2,514,496	2,514,496	-	-	-	
식 품 진 흥	84,963	84,950	13	-	-	
문 화 진 흥	6,213,183	6,213,183	-	-	-	
통합재정안정화	4,017,031	4,017,031	-	-	-	
체 육 진 흥 기 금	1,000,273	1,000,273	-	-	-	